

부산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545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545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합494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변론 종결2021. 11. 11.

판결 선고2021. 12. 23.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합494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 11. 24.자 채권양도양수계약과 피고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 12. 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2,985,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내지 제12호증의 4를 포함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는, D(주)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이전에 그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피고들에게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역시 이 사건 조합 설립 이전에 이루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과는 달리 이 사건 조합처럼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률행위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고 설립 후 조합총회에 의하여 별도의 추인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7.에야 설립 인가를 받았고, 조합총회에서 D(주)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 채권들을 추인한 시점은 그보다도 한참 후이므로, 1) 위와 같은 추인이전에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된 채권들은 단지 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들로서는 아직 온전하게 효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설립 인가나 추인보다 훨씬 이전인 2019. 3. 19.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위 채권들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승계참가인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그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한 2019. 3. 28.경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본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에 관한 관련 법리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3. 28.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된 채권들의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이든,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이든 간에 D(주)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역시 D(주)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은, 원고 자신도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2017머691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 D(주)를 채무자, 이 사건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주)가 애초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던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 등 업무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7729호)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리고 원고가 2019. 3. 28. 무렵에는, ㉠ D(주)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D(주)가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합이 앞서 추진위원회가 당사자가 되어 성립되어 있던 채권채무관계를 추인하는 것은, 그러한 추인행위로 이 사건 조합이 종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추인 전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던 채권채무관계가 추인행위로 인해 비로소 재산적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⑤ 요컨대, 이 사건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 추인행위와는 무관하게, D(주)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들은 엄연히 사해행위취소에서 문제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데, 원고는 늦어도 2019. 3. 28.경에는 앞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D(주)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용

판사최환

판사최희영

1) 이 사건 조합이 언제 총회를 개최하여 앞선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였던 이 사건 조합 측이 위 소송의 2019. 9. 24.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추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직전 무렵으로 보인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2)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이전이다.